

#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### KCA 4115

Date of issue: 2012-08-16

Revision date: 2013-08-02

Version: R0004.0002

#### 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##### 가. 제품명

- KCA 4115 [MSDS-716]

##### 나. 제품의 권리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용도      | : 도료, 접착제, 전기절연 분야, 토목, 건축 분야. |
| - 사용상의 제한 | :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##### ○ 제조자 정보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회사명     | : 금호피엔비화학주식회사                |
| - 주소      | :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2로 218         |
| - 담당부서    | : 환경안전팀                      |
| - 전화번호    | : 061-688-3682, 061-688-3684 |
| - 긴급 전화번호 | : 061-688-3507               |
| - FAX 번호  | : 061-688-3686               |
| - 이메일 주소  |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# 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회사명     | : 금호피엔비화학주식회사                      |
| - 주소      | : 서울 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, 시그니처타워 동관 8층 |
| - 담당부서    | : 영업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전화번호    | : 02-6961-3464, 3481               |
| - 긴급 전화번호 | : 02-6961-1114                     |
| - FAX 번호  | : 02-6961-3492                     |
| - 이메일 주소  | : epoxy Domestic@kpb.co.kr         |

#### 2. 유해성·위험성

#####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급성 독성(경구) : 구분4
- 급성 독성(경피) : 구분4
-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: 구분3
- 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 : 구분1
- 특정효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구분1
- 피부 과민성 : 구분1
-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 : 구분1

#####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##### ○ 그림문자



##### ○ 신호어

- 위험

##### ○ 유해·위험 문구

- H302 (경구)삼키면 유해함
- H312 (경피)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

-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-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-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- H370 신체 중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(11항 참조(MSDS)).
- H412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 생물에게 유해함

○ 예방조치문구

1) 예방

- P260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- P261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.
-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.
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
2) 대응

- P301+P312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01+P330+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.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.
- P302+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.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시오.
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- P307+P311 노출되면 의료기관(의사)의 도움을 받으시오.
- P310 즉시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-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.
- P322 필요한 조치를 하시오.
- P330 입을 씻어내시오.
- P333+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·주의를 받으시오.
- P363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.

3) 저장

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.

4) 폐기

-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·용기를 폐기하시오.

#### 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○ NFPA 등급 (0 ~ 4 단계)

- 보건 : 3, 화재 : 1, 반응성 : 0

##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(異名)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1,3-Bis (Aminomethyl) benzene	1,3-Benzenedimethanamine	1477-55-0 / KE-02918	40
Benzyl alcohol	-	100-51-6 / KE-02570	15

#### 4. 응급조치 요령

##### 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콘택트렌즈를 착용했을 경우 우선 렌즈를 제거하시오.

#####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복은 재사용 전에 충분히 세탁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- 증상(발적, 자극 등)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시오.

-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.
- 피부 확산을 방지하시오.

#### **다. 흡입했을 때**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**라. 먹었을 때**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-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.

#### **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**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### **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**

#### **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**

- 분말소화약제, 이산화탄소, 물, 알코올형 흡
- 위터젯을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.

#### **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**

-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음
-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
-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
- 일부는 금속과 접촉시 가연성 수소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
- 비인화성,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/독성 흡을 발생할 수 있음
- 일부는 산화제로 가연성 물질을 점화할 수 있음
- 독성: 흡입, 섭취,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
- 용융물질과 접촉 시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음

#### **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**

-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.
- 화재가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충분한 양의 물로 용기를 냉각시키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.
-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시오.
-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시오.
-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.

### **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**

#### **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**

-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고 바람을 안고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시오.
- 누출지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하시오.
- 모든 접화원을 제거하시오
-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시오.
- 유출 액체 및 누출 부위에 직접 주수하지 마시오.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경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.
- 피부 접촉 및 흡입을 피하시오.

#### **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**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
#### **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**

- 다량누출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시오.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.
- 소량 누출 :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.
- 용매를 닦아내시오.
-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.
- 폐수가 수로, 하수구, 지하로 유입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시오.

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### 가. 안전취급요령
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시오.
- 사용 전에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시오.
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시오.
-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.

### 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- 직사광선을 피하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밀폐하여 놓으시오.
- 화기엄금
- 밀폐용기에 담아 수거하시오.
-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장소에 저장하시오.
- 취급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.

## 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 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#### ○ 국내노출기준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TWA : C 0.1 mg/m<sup>3</sup> - m-크실렌- $\alpha$ ,  $\alpha'$ -디아민

#### ○ ACGIH노출기준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C 0.1 mg/m<sup>3</sup>

#### ○ 생물학적 노출기준

- 해당없음

### 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사업주는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흄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스 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 또는 가스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.

## 다. 개인 보호구

#### ○ 호흡기 보호

-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.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.
- 방독마스크(직결식 소형, 유기ガ스용)
-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(유기ガス用 정화통 및 전면형)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ガス用 정화통 및 전면형)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#### ○ 눈 보호

-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
#### ○ 손 보호

-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.
- 적합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.

## 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액체(점성이 있는 액체)
- 색	투명한 노란색
나. 냄새	암모니아 냄새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알칼리성
마. 녹는점/어는점	14.1 °C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273 °C
사. 인화점	134 °C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자료없음
카. 중기압	자료없음
타. 용해도	4mmHg (25 °C)
파. 중기밀도	자료없음
하. 비중	1.05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0.18
너. 자연발화온도	자료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러. 접도	50~500cps at 25 °C
머. 문자량	자료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###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
### 나. 피해야 할 조건

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시오.

### 다. 피해야 할 물질

- 자료없음

###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 - 자료없음
- (경구)
  - (경구)삼키면 유해함
- (눈·피부)
  -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
  -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
  -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

### 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급성 독성
  - \* 경구 독성
    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LD50 = 980 mg/kg Rat
    - [Benzyl alcohol] : LD50 = 1230 mg/kg Rat

\* 경피 독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LD50 = 2000 mg/kg Rabbit
- [Benzyl alcohol] : LD50 = 2000 mg/kg Rabbit

\* 흡입 독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LC50 = 2800 ppm 4 hr Rat
- [Benzyl alcohol] : LC50 = 0.9 mg/l 4 hr Rat

○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기니피그의 피부에 부식성, 흰쥐의 피부에 피하 출혈, 과사
- [Benzyl alcohol] : 보통 자극(100mg, 24시간, rabbit)

○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흰쥐를 이용한 시험에서 피부 부식성
- [Benzyl alcohol] : 비자극성(rabbit)

○ 호흡기 과민성

- 자료없음

○ 피부 과민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기니피그 시험에서 감작성 양성률이 70%

○ 발암성

\* 산업안전보건법

- 자료없음

\*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

- 자료없음

\* IARC

- 자료없음

\* OSHA

- 자료없음

\* ACGIH

- 자료없음

\* NTP

- 자료없음

\* EU CLP

- 자료없음

○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소핵 시험 결과 음성

○ 생식독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흰쥐(rat)를 이용한 경구 투여 시험에서 부모 동물에게 일반 독성이 인정된 용량에서 생식 독성이 나타나지 않음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
- 자료없음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흰쥐를 이용한 경구 투여 시험 결과 구분 2의 기준값 범위 이상에서 중대한 독성 작용은 없음

○ 흡인 유해성

- 자료없음

○ 고용노동부고시

\* 발암성

- 자료없음

\*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자료없음

\* 생식독성

- 자료없음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### 가. 생태독성

○ 어류

- [Benzyl alcohol] : LC50 = 10 mg/l 96 hr

○ 갑각류

- 자료없음

○ 조류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EC50 = 14 mg/l 72 hr

#### 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- 잔류성

- [Benzyl alcohol] : log Kow = 1.1

- 분해성

- 자료없음

#### 다. 생물 농축성

- 생물 농축성

- 자료없음

- 생분해성

- [1,3-Bis (Aminomethyl) benzene] : Biodegradability = 22 (%)

- [Benzyl alcohol] : Biodegradability = 94 (%) 28 day (Aerobic, Activated Sludge)

#### 라. 토양 이동성

- 자료없음

#### 마. 기타 유해 영향

- 자료없음

### 13. 폐기 시 주의사항

#### 가. 폐기방법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-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기름과 물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.

#### 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#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#### 가. 유엔번호 (UN No.)

- 2927

#### 나. 유엔 적정 선적명

- Toxic liquids, corrosive, organic, n.o.s.

####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6.1

#### 라. 용기등급

- II

#### 마. 해양오염물질

- 해당없음

####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.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F-A (General fire schedule)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S-B (Corrosive substances)

### 15. 법적 규제현황

### 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 - 해당없음
- 노출기준설정물질
  - 해당됨 (1,3-Bis (Aminomethyl) benzene)
- 관리대상유해물질
  - 해당없음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 - 해당없음

### 나.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
  - 해당없음
- 관찰물질
  - 해당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 - 해당없음
- 사고대비물질
  - 해당없음
- 취급제한물질
  - 해당없음

###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위험물에 해당됨 : 제3석유류 (지정수량 : 2000리터(비수용성액체), 4000리터(수용성액체)) (다만,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.)
- [Benzyl alcohol] : (지정수량 : 제4류 제3석유류(비수용성))

###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폐유기용제)에 해당됨.

### 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전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
  -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 - \* 확정분류 결과
    - [Benzyl alcohol] : Xn; R20/22
  - \* 위험 문구
    - [Benzyl alcohol] : R20/22
  - \* 예방조치 문구
    - [Benzyl alcohol] : S2, S26
- 미국 관리 정보
  - \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   - 해당없음
  - \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   - 해당없음
  - \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    -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스펙홀름 협약 물질
  -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  - 해당없음

**16. 그 밖의 참고사항****가. 자료의 출처**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4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**나. 최초 작성일자**

- 2012-08-16

**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**

- 3회, 2013-08-02

**라. 기타**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